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람질서 방해 관람객에 대한 행위 제한 및 과태료 부과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1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관람질서 방해 관람객에 대한 행위 제한 및 과태료 부과(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10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8. 10.

다. 회 부 일 : 2026. 8.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관람질서 방해 관람객에 대한 행위 제한 및 과태료 부과

(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10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제한 및 퇴장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10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2(관람자에 대한 입장제한 및 퇴장명령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03조(과태료) ①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에 관람객이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관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 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 제49조의2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와 해당 조치에 따르지 않는 객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 보이므로, 해당 조항을 분리하여 “①국가유산청장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여 ‘필요한 조치’의 주체와 그 내용에 대한 제한 및 입장제한·퇴장명령의 객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입장제한 또는 퇴장명령에 불응하면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폭행·협박이나 기물파손 등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국가유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해당 조문 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표현은 조치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근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03조제1항제3호의2는 입장제한 또는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입장제한·퇴장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과 그 불이행에 별도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또는 명령의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성격의 위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제처의 법제실무강좌¹⁾에서도 의무규정의 성질과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벌칙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1) 법제처. (2009). 법제업무강좌(9).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298&utm_source=chatgpt.com

개정안은 폭행·협박이나 기물파손 등을 수반하지 않은 입장제한·퇴장명령의 단순 불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명령 불이행의 발생 실태와 그로 인한 국가유산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의 지장 정도, 기존 대응수단의 한계 등을 확인하여 별도의 과태료를 통한 이행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태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국가유산 및 관람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및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대상과 상한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법」 제20조²⁾에서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응한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³⁾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⁴⁾에서 공원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면서

2) 「노동위원회법」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해당 지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2호를 통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80

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